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News Letter

2008 06 Vol. 55

Contents

01열려라 중국
- 《중국 에너지이슈에 대한 사고》의 글에 대한 평설 (임호 중국변호사)

05 생생러시아
- 러시아의 외국환 규제 (채희석 변호사)

08 주목! 이 판례
- 융통어음 할인과 신용보증책임

11 최신법령
- 건축물, 방화에 지장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추가

13 지평소식
- 법무법인 지평 • 법무법인 지성 합병 발표
- 상해 지사, 화동이공대학에 지평화리장학금 수여
- 중국대사관에 지진피해 성금 전달
- 조용환 변호사, 헌정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
- 임성택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간담회 참석
- 김상준 변호사, M&A전문가 과정 'M&A 법규 해설' 강의
- 최찬욱 변호사, 교통방송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19 업무동향
- 로또복권 수수료 소송 수행

20 영입인사
- 박형준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02-6050-1600 FAX: 02-6050-1700 http://www.horizonlaw.com E-mail : master@horizonlaw.com
Copyright ⓒ HORIZON LAW GROUP All rights Reserved.

(열려라 중국)

《중국 에너지이슈에 대한 사고》의 글에 대한 평설

법무법인 지평 상해 지사 임호 중국변호사

국내외 에너지형세와 중국 에너지발전의 문제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동 논문에서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으로 중국에 에너지 공급난이 점차 대두고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 시대 경제글로벌화는 에너지자원의 글로벌화된 재배치를 요하나 비합리적인 국제정치 경제질서 및 에너지 시장 규칙은 개도국이 국제에너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안전은 경제안전 및 국가안전과 연관되는 문제이고, 에너지 안전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석유안전인데, 중국의 경우 석유 대외 의존도가 이미 50%에 달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후변화가 에너지 발전에 대한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과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특색의 에너지발전 전략적 방향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금후 몇 십년은 중국 경제사회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관건적 시기이므로 에너지 건설 임무가 중대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중국특색의 에너지 발전전략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너지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절약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형평의 중요한 전제이며 중국의 기본국정에 부합되므로,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각종 규모화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에너지 자원구조를 양호하게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착안하여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개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에너지기술을 비축하여야 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에너지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제에너지 합작을 통하여 에너지 경제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에너지 분야의 대외개방경로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대외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공급능력을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너지의 유효한 개발과 이용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 및 기타 수자원, 풍력자원 및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자원의 중국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유효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i) 안전생산을 전제로 하는 세계 선진수준의 석탄생산을 추진하고, 석탄의 고효율 및 청결이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ii) 천연가스의 경우, 대규모 빠른 발전을 위한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증가하고, 천연가스의 비중을 대폭 향상하여야 하고, (iii) 석유의 경우, 국내석유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금투입을 확보하고 지질탐사능력을 향상하여야 하며, (iv) 재생에너지의 경우 수력자원은 기술이 이미 성숙되었으므로 최근 발전하여야 할 주요 대상이고, 풍력자원은 이용기술이 기본적으로 성숙되었으므로 현재 대규모 개발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공급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태양에너지는 관건적인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 경제성 및 대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발전 및 송전 시스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화력발전은 그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과 환경보호 강화, 수력 및 핵발전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풍력발전시스템의 총체적 설계능력 향상, 베어링, 변환기, 통제시스템 등 주요 부품의 설계상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부전기의 동부수송"과 같이 장거리, 대용량 수송 등을 위해 송전기술과 배전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에너지 발전정책에 대한 건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전략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에너지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 에너지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경제정책의 중요한 지위에서 다음과 같이 장기적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i) 중대한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조기에 수립하여 질서 있는 건설을 추진하여야 하며, (ii) 핵심 분야 에너지기술에 대하여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에너지기술을 비축하여야 하고, (iii) 금융수단, 국가의 재무 및 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개발과 기술창조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에너지시장과 연관된 에너지가격 체제를 형성하고 에너지자원의 유상 사용제도,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에너지 재정 및 세수정책을 실행하고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의 정부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거시적인 조정, 시장감독과 관리 및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등 기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본 법률시스템을 확립하고 에너지 분야의 법 집행, 법에 의한 감독 및 관리를 촉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에너지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에너지 생산국, 소비국의 상호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에너지 무역과 투자합작을 확대하고, 에너지기술, 관리, 인재의 교류를 증진하여 세계 각국 자원의 상호우세보완, 에너지공급 보장 및 경제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여야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 설

국제유가가 130 달러를 넘어 치솟고 있는 현재, 중국의 전 국가주석이 발표한 논문은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정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에너지전략 또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동 논문의 논조는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에너지법에 대한 입법위원회의 논조와 거의 일맥상통하며, 에너지의 시장화, 상품화에 관해서는 더욱 진보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국제에너지가격과 연동되는 가격체제를 운영하고 에너지 유상 사용제도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시장화가 중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에너지 기술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미래 에너지 관련 산업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유치정책은 장려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2007 년 <중국 외상투자기업산업지도목록>(수정판)상으로도 에너지자원의 채광업, 신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 발전 및 송전 시설의 제조 등은 지분제한은 있지만 모두 장려형 산업에 포함되어 중국정부가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에너지자원 소유자와 개발자의 분쟁가능성, 개발사업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충돌가능성, 개발상과 지방정부, 토지사용권자의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 동안 중국에너지법 입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의견수렴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많은 의견을 개진 하였으며 또한 중국, 러시아 에너지 개발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에너지분야 관련 법률지식 및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나 유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중국 에너지법에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에 한국기업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에너지 법의 입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HLG

(생생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환 규제

법무법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

관련법규 및 감독기관

러시아 하원은 2003년 12월 10일 외환거래법(Federal Law No. 173-FZ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of December 10, 2003)을 제정하여 1992년에 제정된 기존 외환거래법을 대체하였습니다. 신 외환거래법은 구 외환거래법 상의 엄격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특히 규제 대상이 되는 외환거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외환관리권한을 중앙은행(CBR)과 연방정부로 분산하여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7년 1월 1일자 외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외환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되어 상당히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 및 중앙은행은 외환관리기관으로서 외환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외환관리에 관한 법규제정권이 있습니다. 한편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외환감독기관은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연방 행정기관과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그 감독업무와 관련된 외환감독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기관은 외환감독 대리기관인데, 이러한 감독대리기관은 (i) 중앙은행에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외환거래은행, (ii) 수출입은행(the State Corporation Bank of Development and of Foreign Economic Acivities), (iii) 유가증권 시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방 행정기관에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외환거래은행 이외의 유가증권전문업자, 세관 및 세무관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환거래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의 거래는 외환거래로 분류되므로, 외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i)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적법하게 외국환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행위, 거주자가 지급수단으로써 외국환을 사용하는 행위
(ii)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적법하게 외국환, 러시아

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을 양도하는 행위, 지급수단으로써 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을 사용하는 행위

(iii)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을 양도하는 행위 및 지급수단으로써 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을 사용하는 행위

(iv)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및 국내유가증권의 러시아연방 관세지역으로의 반입 및 러시아연방 관세지역으로부터의 반출

(v)해외에서 개설한 계좌로부터 국내에서 개설한 동일인 계좌로, 또는 국내에서 개설한 계좌로부터 해외에서 개설한 동일인 계좌로 외국환, 러시아연방 통화, 국내외 유가증권을 송금하는 것

(vi)비거주자가 국내에 개설한 계좌로부터 국내에 개설한 다른 계좌로 러시아연방 통화, 국내외 유가증권을 송금하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환거래법상의 규제는 당사자, 거래형식, 거래대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당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그 규제방식을 달리합니다. 외환관리법상 거주자는 러시아 연방에 정주지를 둔 러시아 국민과 외국인, 무국적자, 러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러한 법인의 해외 사무소 및 지점 등입니다. 비거주자로는 정주지가 해외에 있는 개인, 러시아 이외에서 설립된 법인(해외법인), 해외법인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외법인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가 러시아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설립된 현지법인은 거주자이지만, 한국법인의 러시아지점은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자간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을 사용하여 거래할 수 없고, 비거주자간의 거래에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사용 이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의 외국환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의 측면에서 보면 현지법인보다는 지점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 외환규제 제도

2007년 1월 1일자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외환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규제는 거주자에 대하여 여전히 적용됩니다.

(i)러시아 회사는 취득한 외환을 러시아 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함

(ii)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외환거래(자금대여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Transaction Passport를 취득하여야 함

(iii)외환의 매매는 허가를 받은 외환취급은행에서만 가능함

(iv)현금의 수출에는 일정한 제한이 부가됨

(v)러시아의 회사 혹은 개인이 OECD 혹은 FATF 국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과세당

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계좌의 현금흐름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하여야 함

(vi)거주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부가됨. HLG

(주목 이 판례!)

융통어음 할인과 신용보증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5월 23일 선고 2006다 36981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명: 구상금 등

1. '할인어음'과 융통어음

금융기관의 여신과목(대출과목) 중에는 '할인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인어음이란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제3자가 인수한 환어음을 소지인(할인의뢰인)이 만기전에 현금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어음을 배서양도하고, 어음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이자 그밖의 수수료(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는 여신거래'를 말합니다. [1]

여신거래에서 할인 대상 어음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어음도 할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할인취득한 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으려면, 그 어음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 즉 '상업어음'이어야 합니다(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 제6조 참조). [2]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재할인 매입의 대상을 상업어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할인 대상 어음을 '상업어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음을 할인할 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그 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징구합니다. [3]

2. 융통어음을 할인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

(1) 문제점

은행이 어음을 할인 취득한 후에 그 어음이 융통어음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할인어음 거래에 대해 보증을 한 보증인이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의 할인'이라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경우

[1] 한상문, 여신실무법률(상)-거래편, 121쪽, 한국금융연수원(2007)
[2] 위 책, 126-128쪽
[3] 위 책, 128-129쪽

대법원은 '어음할인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어음할인 거래는 타인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할인취득자에게 배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어음할인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인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거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보증인의 보증범위가 주채무자의 상업어음의 거래로 인한 채무만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한 바도 없다면,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인 할인어음취급요령에서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와 금융기관이 융통어음임을 알면서 서로 공모하여 어음거래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제3자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 57720 판결 등). 즉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어음 할인 부분의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3)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할인어음 대출에 관해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보증서' 중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과목'에 '할인어음'이라고 기재한 후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4] 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특약의 해석'에 관해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러한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 38108 판결 등).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책임의 유무'에 관해 대법원은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신용보증기금은 위 특약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대출 금융기관

[4] 한편 상업어음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인수된 어음", 즉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에 규정된 '상업어음'의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할 당시 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채무자가 이미 신용보증약관 소정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융통어음 할인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특약에 기해 그 보증책임을 부정해 왔습니다(위 판결 등 참조).

3. 대상판결의 내용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목과 특약사항의 내용,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취지,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는 동기와 경위, 신용보증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신용보증에 의하여 인수되는 위험 및 상업어음할인대출 절차의 엄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의해 신용보증을 한 당사자의 의사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업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실시한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님이 드러났다 하여도 그 할인에 의한 대출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용보증계약 상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해석 및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어음할인 당시 금융기관의 선관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유무가 달라진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 할인한 어음이 후에 융통어음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대출(할인)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용보증서 상의 특약에 기해 신용보증책임을 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대출(할인)과정 상 금융기관의 선관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의 책임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이 할인어음 대출을 취급한 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신용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음을 할인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할인어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세금계산서 징구 및 조사'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5월 23일 선고 2006다36981 구상금 등 전원합의체 판결 HLG

(최신 법령)

1. 건축물, 방화에 지장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103호)

개정전 건축법은 화재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건축현장에서 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참사를 불러 온 예로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또는 공사감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9106호)

그간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계 기관 협의내용에 대하여 통합조정회의를 통하여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례법 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추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03호)

기존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또는 회의 등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교육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지평소식)

법무법인 지평 · 법무법인 지성 합병 발표

저희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지성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만들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5월 22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합병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 좌로부터 지평 양영태 변호사, 지평 조용환 대표변호사, 지성 주완 대표변호사, 지성 강성 변호사)

저희 지성과 지평이 합병하여 설립하는 로펌(이하 "통합로펌"이라고 함)은 변호사 125명(한국변호사 104명, 외국변호사 21명)을 보유한 7번째 대형로펌으로, 규모 면에서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에 이어 7위가 됩니다.

통합로펌의 이름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영문명: Jisung Horizon)"으로 결정되었으며, 대표변호사는 지성측이 3인, 지평측이 2인을 맡고, 경영위원회는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소는 지평 사무소(남대문 상공회의소 빌딩), 지성의 강북사무소(남대문 HSBC 빌딩) 및 강남사무소(강남역 현대해상화재보험 빌딩) 등 3곳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적 합병까지는 실무처리상 1-2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로펌은 M&A, 노동, 금융·증권, 소송, 건설·부동산, 조세, 해외사업, 정보미디어, 환경·자원·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성은 M&A와 노동이 강하고, 지평은 하이트의 진로 인수 등 대형 M&A 경험이 많아서, 통합로펌은 노동 이슈가 중요한 공기업 민영화나 대형 M&A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합로펌은 부동산금융, ABS 등 구조화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증권, 펀드 등에 전문화된 인력이 30여명이 넘어 금융전문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은 2006년도에 '아시아로'(Asia Law, 유러머니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 저널)가 송무 부문 2위로 선정할 만큼 소송이 강한데, 여기에 법관 출신인 지성의 이호원 변호사(가정법원장 역임), 박동영 변호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홍성준 변호사(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역임) 등이 결합하게 되어, 통합로펌은 막강한 송무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통합로펌은 연내에 가사팀과 형사팀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평의 전략분야인 중국(상해 지사), 베트남(호치민시티 지사)·아세안,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본 및 북한 사업과 지성의 필리핀 사업 등도 더욱 심화·확대될 것입니다. 통합로펌은 해외사업본부를 만들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합로펌은 국제적 수준의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글로벌 영·미 로펌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로펌은 단순한 대형로펌이 아닌 "명문 로펌"을 지향합니다. 즉, 전문성과 수익성은 기본이고, 윤리성, 공익성, 민주성 등을 철저히 견지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병은 규모확대를 위한 방안 이상의 "이상적인 로펌을 현실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LG

2008년 5월 26일

법무법인 지평 · 법무법인 지성

주요 뉴스기사

- 연합뉴스 - [TV] 법무법인 지평·지성 `지평지성'으로 합병
- 한 겨 레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합병
- 매일경제 - 지평-지성 로펌 합병발표...중견 법무법인 통합 신호탄
- 한국경제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합병
- 서울경제 - 로펌 지성-지평 합병, 업계 7위 규모... "법무법인 합종연횡 신호탄"

(지평소식)

상해 지사, 화동이공대학에 지평화리장학금 수여

법무법인 지평의 상해 지사는 5월 15일, 화동이공대에서 제1회 지평화리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이 대학의 법대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화동정법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던 법무법인 지평은 2007년 중국 상해 지사를 개소한 이후 화동이공대학 법대에도 장학금 제도를 설립하여 이번에 최초로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두 대학 모두 상해지역에 있는 유명 법과대학으로 지평의 본사 중국팀을 이끌고 있는 지평의 명한석 변호사가 화동정법대학에 유학하기도 했습니다.

지평의 상해 지사는 최정식 변호사를 지사장으로 하여 임호 중국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임청 중국변호사가 현지에서 근무중이며,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경영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LG

(사진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지사 지사장 최정식 변호사 (두번째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15일 화동이공대를 방문하여 지평화리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조준금, 이걸, 심흠이 학생 및 학교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지평소식)

법무법인 지평, 중국대사관에 지진피해 성금 전달

법무법인 지평은 6 월 9 일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 사내모금 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중국민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HLG

[뉴스기사]

• 서울경제 - 中 쓰촨성 지진피해 돕기 법조계도 나섰다 (지면PDF 보기)

(지평소식)

조용환 변호사, 헌정 60 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 조용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5월 23일,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가 주최한 '헌정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HLG

(지평소식)

임성택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간담회 참석

(사진: 왼쪽으로부터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와 황인영 변호사는 지난 5 월 16 일,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주최한 ' 법무법인의 공익인권활동 간담회'에 참석하여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영국 공익인권법률단체인 로웍스(LawWorks)의 마틴 쿠르티스 변호사가 '한국 로펌들의 공익법 활동 발전방향'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국내 8 개 로펌의 공익담당 변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HLG

[뉴스기사]

• 법률신문 -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지평소식)

김상준 변호사, M&A전문가 과정 'M&A 법규 해설' 강의

(사진: 법무법인 지평 김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는 지난 6월 4일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에서 각 증권사 IB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M&A 법규 해설"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강의한 한국증권업협회 제23기 "M&A전문가 과정" 은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M&A의 성공전략, M&A관련 회계처리 등 심도 있는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종합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M&A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HLG

(지평소식)

최찬욱 변호사, 교통방송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사진 : 법무법인 지평 최찬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최찬욱 변호사는 2008년 6월 11일 교통방송 개국 18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최찬욱 변호사는 그 동안 교통방송의 "TV서울" 시민 편성자문단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생활법률자문을 제공왔으며, 방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방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HLG

(업무동향)

법무법인 지평, 로또복권 수수료 소송 수행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복권 시스템 운용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수수료청구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지난 5 월 20 일 서울고등법원(제 14 민사부)에서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1 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 195 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소송에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한 대한민국(복권위원회)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액 중 약 44 억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복권기금이 약 4,000 억원 정도 보전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HLG

[뉴스기사]

• 서울신문 - [이달의 판결] 로또 소송은 법조종합선물세트?

[담당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조병규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영입인사)

박형준 미국변호사 (미국 일리노이주)

□학력사항

-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B.A. in Economics
- 미국 Columbia University, Ph.D. Program in Economics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경력사항

- 법무법인 김장리 미국변호사
- 문화재청 제도/법률 자문위원
- 현 법무법인 지평 미국변호사

□인사말

금번 지평의 회사파트에 입사한 박형준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평에 입사하기 전 법무법인 김장리에서 7 여년동안 주로 M&A, 외자유치, 공정거래, IP, 각종 영문계약 작성 및 검토 등의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해외 다국적 기업을 대리해 외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자문업무와 법률실사업무가 주요경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 Fortune 500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들을 대리하여 자회사 운영에 관련된 공정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의 여러 유능하신 변호사님들과 함께 고객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LG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http://www.horizonlaw.com

서울 본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